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2일  
미래·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3년 11월 6일
- 나. 제안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 11. 22.)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 □ 제안이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설치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관광진흥법」 조문이동 현행화 및 위임방식을 단순 명확화 (안 제3조)
-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정하고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 제5조의 2)
- 다.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 (안 제12조)
- 라.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법 조문 이동 현행화 (별표)

마. 그 밖에 조문 이동 현행화 및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해당부서: 자원순환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9. 20. ~ 10. 10.)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개정취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3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기존의 ‘편의를 도모’에서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로 확대하였음

○ 안 제5조의2에서는 상위법 개정<sup>1)</sup>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전 계획,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개방화장실 운영을 상시[24시간 개방]와 정시[일정 시간 개방]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제12조의 제목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sup>2)</sup> 및 영 제8조<sup>3)</sup>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 2) 제9조(개방화장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3)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 【별지 제1호 서식】공중화장실 관리카드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관련 사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여부, 비상벨 및 CCTV 설치 수]을 추가하여 서식을 변경하였음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기존 법률에서 공중화장실의 ‘이용 편의 증대와 위생관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급증한 공중화장실 내 범죄<sup>4)</sup>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된 것임
- 관내 비상벨 설치현황[2023년 10월 기준]을 살펴보면 설치 대상인 112개소 중 62개소가 설치된 상황이며, 예산편성을 통해 2024년에도 비상벨 및 CCTV가 35개소 이상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 4) 경찰청 ‘공중화장실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2015년~2019년)

- 총 범죄 건수는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에는 4,528건으로 약 2.3배 증가
- 성범죄 등 풍속범죄 2015년 685건에서 2019년에는 1,150건으로 약 2배 증가
- 기간 중 공중화장실 범죄의 아동 및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 무려 3,054명으로 범죄 전체의 20% 차지하고 있음

-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긴급상황 및 범죄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비·보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시행 2023. 7. 21.>